공 개

의안번호	제 104 호
의 결 연 월 일	2026. 4. 8 (제7차)

의결사항

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

증권선물위원회 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권 대 영
제출 연월일	2026. 4. 8

1. 의결주문

한국거래소(이하 “거래소”)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내-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의 일환으로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 마련을 위해 옵션 상품 다양화 추진

3. 주요골자

□ 개별주식 및 ETF에 대한 위클리옵션 도입 근거 마련

○ 위클리상품에 대한 총칙 근거 조항 마련(안 제9조)

○ 위클리옵션의 대상 상품을 개별주식옵션 및 ETF옵션으로 확대(안 제30조, 제37조의7)

4. 참고사항

가.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: <별지>

나.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·구조문대비표 : <별첨>

<별 지>

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결제월거래”를 “결제월거래 및 결제주거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제월거래와 별도로 각 주의 특정한 거래일을 최종거래일로 하는 거래(이하 “결제주거래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16조제2항 전단 중 “제9조 및 제1항에도”를 “제1항에도”로 하고, “결제월거래와 별도로 각 주의 특정한 거래일을 최종거래일로 할 수 있다.”를 “결제주거래를 둘 수 있다.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각 주의 특정한 거래일을 최종거래일로 하는 거래의”를 “해당 결제주거래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수 및 설정방법은”을 “수와 설정방법 및 그 밖에 행사가격의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”으로 한다.

제3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 제3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주식옵션거래의 경우에는 결제주거래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결제주거래의 거래개시일 및 거래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제37조의7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 제3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

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ETF옵션거래의 경우에는 결제주거래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결제주거래의 거래개시일 및 거래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및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 첨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결제월거래) ① 파생상품거래는 결제월의 특정한 거래일을 최종거래일로 하는 거래(이하 “결제월거래”라 한다)로 구분한다.	제9조(결제월거래 및 결제주거래) ①----------.
② 파생상품거래는 최초로 최종거래일이 도래하는 결제월거래의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을 새로운 결제월거래의 거래개시일로 한다.	②----------.
<신 설>	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제월거래와 별도로 각 주의 특정한 거래일을 최종거래일로 하는 거래(이하 “결제주거래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③ 거래소는 천재·지변, 전시·사변, 시장에서의 화재, 경제사정의 급변 또는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,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생상품거래의 최종거래일, 권리행사일, 거래기간 또는 거래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다.	④----------.
제16조(결제월 및 행사가격 등)① (생략)	제16조(결제월 및 행사가격 등)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9조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옵션거래의 경우에는 결제월거래와 별도로 각 주의 특정한 거래일을 최종거래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각 주의 특정한 거래일을 최종거래일로 하	② 제1항에도 ----------결제주거래를 둘 수 있다. ---------- 해당 결제주거래의 ----------.

는 거래의 거래개시일 및 거래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3항에 따른 행사가격의 수 및 설정방법은 상품의 특성, 기간별 거래 수요, 기초자산 및 다른 상품과 연계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.	④ ---------- 수와 설정방법 및 그 밖에 행사가격의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----------.
제30조(결제월 및 행사가격 등) ① (생 략)	제30조(결제월 및 행사가격 등) ①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주식옵션거래의 경우에는 결제주거래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결제주거래의 거래개시일 및 거래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② (생 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③ 제2항에 따른 행사가격의 수와 설정방법 및 그 밖에 행사가격의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품의 특성, 기간별 거래 수요, 기초자산 및 다른 상품과 연계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.	④ 제3항---------- -.
제37조의7(결제월 및 행사가격 등) ① (생 략)	제37조의7(결제월 및 행사가격 등) ①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ETF옵션거래의 경우에는

	결제주거래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결제주거래의 거래개시일 및 거래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② (생 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③ 제2항에 따른 행사가격의 수와 설정방법 및 그 밖에 행사가격의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품의 특성, 기간별 거래 수요, 기초자산 및 다른 상품과 연계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.	④ 제3항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
소관부서	자본시장과
연 락 처	02-2100-2652